

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(제10조의2제1항 관련)

1. 정책계획

구분	정책계획의 종류	협의 요청시기
가. 항만의 건설	1) 「연안관리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	「연안관리법」 제6조제2항에 따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
나. 도로의 건설	1)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4 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 획 2)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 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	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 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 시장·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 의 의견을 들을 때
다. 수자원 의 개발	1) 「지하수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2) 「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	「지하수법」 제6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할 때 「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할 때
라. 관광단 지의 개 발	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	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률」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 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할 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

2. 개발기본계획

구분	개발기본계획의 종류	협의 요청시기
가. 도시의 개발	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	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
나. 도로의 건설	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	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5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같은 교통 권역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와 협의할 때